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 국고 지원〉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62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년 1월 13일

3.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 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국고 지원) 국가는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재외동포정책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¹⁾ 및 같은 법 시행령²⁾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³⁾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및 금액 등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지급근거가 없더라도 보조금 지급은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행정작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263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3) 2025년도 예산의 경우 보조금으로 332억 7,100만원(민간경상보조 1억 8,100만원, 해외경상이전 324억 4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8,600만원)이 반영됨.